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39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 박충권・김승수・박준태

최수진 · 김장겸 · 김성원

이만희 • 권영진 • 김선교

유상범·박상웅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총포의 불법 소지 등 총포와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이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보다 강화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도검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을 총포의 경우와 같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과 관련된 벌칙수준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및 제70조의3등).

법률 제 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조제2항·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제2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 궁만 해당한다)·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만 해당한다)·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안 해당한다)·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안 해당한다)·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안 해당한다)의 위반한 자제70조의3 중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를 "상습적으로"로 한다. 제71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70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제70조의2(벌칙)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조제2항·제3항(도검·분 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만 해 당한다), 제6조제1항(도검 • 분 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만 해 당한다) • 제2항(도검 • 분사기 ·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 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만 해당한다) • 제2항(분 사기・전자충격기만 해당한 다) • 제3항(도검 • 분사기 • 전 자충격기 · 석궁만 해당한다) 을 위반한 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의3(상습범) <u>총포에</u> 관하여 제70조의3(상습범) 상습적으로---상습적으로 제70조 및 제70조 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해당한다), 제6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해당한다)·제2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해당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해당한다)·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만해당한다)·제3항(도검·분사기·전자方격기만해당한다)·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해당한다)·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해당한다)을위반한자

1의2. ~ 8. (생략)

제71조(벌칙)	
	<u>.</u>
<u><삭 제></u>	

1의2. ~ 8. (현행과 같음)